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직업건강사업 운영실태 -

2018. 11.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1. **감사 대상기관** : 본부(○○실), 지역본부 및 지사

2. 감사 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18. 10.10. ~ 10.19. (8일간) ※ 예비감사: 2018.10.1.~10.9.(5일간)

□ 인 원 : 감사부장 등 8명

3. **감사범위** : 2016. 1. 1. 이후 수행업무 전반

4. 감사중점

감사대상	감사분야	감사 중점사항
본부	근로자 건강센터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의 효과성 점검
		○ 근로자건강센터 관리 및 성과평가의 적정성 점검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선정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점검
	측정·특검 비용지원	○ 비용지원 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 점검
		○ 비용지원 대상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의 적정성 점검
		○ 비용의 허위·부당 청구 적발 및 사전 예방 방안 점검
		○ 비용지원 수수료 검토 및 삭감의 적정성 점검
	건강증진 비용지원	○ 비용지원 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 점검
		○ 비용지원 대상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의 적정성 점검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전략 수립의 적정성 점검
○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대책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의 적정성 점검		
일선기관	근로자 건강센터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변경승인 및 정산의 적정성 점검
		○ 공단 사업과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활성화 점검
	측정·특검 비용지원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수시) 선정의 적정성 점검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 신규사업장 발굴 노력 등 점검
	건강증진 비용지원	○ 건강증진 비용지원 대상 선정의 적정성 점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점검
		○ 협약체결 및 모니터링 활동의 실효성 점검
		○ 건강증진 비용 심사 및 지급의 적정성 점검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대책 이행의 적정성 점검



1. 처분요구사항

○ 행정상조치 : 20건

- (모범) 건강증진 비용지원 사업 내부통제 강화 및 예산절감
- (개선) 근로자건강센터 평가 기준 불합리 등 15건
- (통보) 근로자건강센터 공모주기 등 운영방식 미흡 등 4건
- (시정)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부적정

○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시정	통보	모범	현지 조치
총건수	신분 인원	재정 금액	소계 (금액)	추징 (금액)	회수 (금액)							
20	-	-	-	-	-	- (-)	- (-)	15	1	4	1	-

※ 개선/시정 1건 중복

2. 처분요구 내역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관련자		지 적 내 용
			소속(부서)	직급.성명	
1	2-03-01	통보 (모범)	○○본부	○○본부장	건강증진 비용지원 사업 내부통제 강화 및 예산절감
2	2-03-02	통보	○○실	○○실장	근로자건강센터 공모주기 등 운영 방식 미흡
3	2-03-03	개선	○○실	○○실장	근로자건강센터 평가 기준 불합리
4	2-03-04	개선	○○실	○○실장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실적 인정 기준 불합리
5	2-03-05	통보	○○실	○○실장	근로자건강센터 개인정보관리 미흡
6	2-03-06	개선	○○원	○○원장	측정·특검 비용지원 기관 관리 기준 부재
7	2-03-07	개선	○○실	○○실장	측정·특검 비용지원 모니터링 방법 불합리
8	2-03-08	개선	○○실	○○실장	측정·특검 비용지원 심사 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불합리
9	2-03-09	통보	○○실	○○실장	측정·특검 비용지원 심사 프로그램 운영 미흡
			○○원	○○원장	
10	2-03-10	개선	○○실	○○실장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신청서류 복잡
11	2-03-11	개선	○○실	○○실장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결정 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12	2-03-12	개선	○○실	○○실장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협약 체결방식 부적정
13	2-03-13	개선/ 시정	○○실	○○실장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부적정
14	2-03-14	개선	○○실	○○실장	건강증진 비용지원 수당지원한도 부적정
15	2-03-15	개선	○○실	○○실장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완료보고서 작성내용 중복

표준 번호	일련 번호	처분 구요 내용	관련자		지 적 내 용
			소속(부서)	직급.성명	
16	2-03-16	개선	○○실	○○실장	사업수행 모니터링 수행 방식 불합리
17	2-03-17	개선	○○실	○○실장	지원금 전용통장 개설 요구 불합리
18	2-03-18	개선	○○실	○○실장	외부기관 참여 전문가 자격(경력) 확인 방식 개선
19	2-03-19	통보	○○실	○○실장	질식재해예방 대여장비 관리 미흡
20	2-03-20	개선	○○실	○○실장	콜센터 고객응대업무 위험도 평가 방법 부적정



반(조)	직.성명	담 당 업 무
부장 (감사반장)	○○○	○ 감사반 업무 총괄
1조 (근로자 건강센터)	○○○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실적 관리 등 센터 운영의 적정성 점검 ○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에 관한 사항 - 질식 3대 위험영역 집중관리 사업 점검
	○○○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점검
	○○○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비용지원 포함)
2조 (비용지원)	○○○	○ 비용지원(측정·특검,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 비용지원 사업절차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점검 ○ 감사계획·결과 보고서 작성
	○○○	○ 건강증진 비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점검
	○○○	○ 건강증진 비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활동 결과 검증의 적정성 점검 ○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에 관한 사항 -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 점검
	○○○	○ 측정·특검 비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수수료 검토의 적정성 점검

[붙임]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통 보(모 범)

일 련 번 호	2-03-01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관련자(소속기관)	○○본부장(상동)
제 목	건강증진 비용지원 사업 내부통제 강화 및 예산절감
내 용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고자 「사업장 건강증진 활동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공단(지역본부장)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업무담당자는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업무수행 가이드』 [29.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금 검토요령]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 ○○본부에서는 (유)○○코리아 등 13개소 사업장(연합체)에 대하여 128,781천 원의 건강증진비용을 지원하면서, 해당 사업장(연합체)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 집행 검증을 강화함

으로써 전문가 자격(경력) 및 사업장 체류시간에 따른 경비 조정 등 결정금액 중 45,982,273원(35.7%)의 비용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덧붙임 참조)

이를 통하여 건강증진 비용지원 사업의 내부통제 강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본부에서는 “향후에도 현장 확인 등 지원금 집행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예산 절감에 기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본부장)은

근로자 건강증진 비용지원 사업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 예산(총 45,982천 원) 절감에 기여한 관련업무 담당자(○급 A)에게 자체 포상하시기 바랍니다.(통보/모범)

※ 해당 사례 홍보는 감사실에서 실시예정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라.통보(모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덧붙임) 2017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정산 내역(○○본부)

[단위: 원]

연번	사업장 명	지원결정 금액	삭감금액	최종지급 결정금액	기지급 금액	정산금액	이익금	반환금액
총		128,781,000	45,982,273	82,798,727	104,754,000	-21,955,273	-2,458	-21,957,731
1	XXXX	7,000,000	1,835,000	5,165,000	5,600,000	-435,000	-438	-435,438
2	XXXX	20,000,000	5,391,400	14,608,600	16,000,000	-1,391,400	0	-1,391,400
3	XXXX	7,000,000	3,485,000	3,515,000	6,600,000	-3,085,000	0	-3,085,000
4	XXXX	7,000,000	3,216,000	3,784,000	5,600,000	-1,816,000	0	-1,816,000
5	XXXX	6,100,000	2,350,273	3,749,727	4,880,000	-1,130,273	0	-1,130,273
6	XXXX	20,000,000	5,951,500	14,048,500	16,000,000	-1,951,500	0	-1,951,500
7	XXXX	7,000,000	2,105,000	4,895,000	5,600,000	-705,000	-386	-705,386
8	XXXX	20,000,000	10,317,000	9,683,000	16,000,000	-6,317,000	-1,040	-6,318,040
9	XXXX	7,000,000	4,209,600	2,790,400	5,600,000	-2,809,600	0	-2,809,600
10	XXXX	7,000,000	806,500	6,193,500	7,000,000	-806,500	0	-806,500
11	XXXX	6,700,000	2,055,000	4,645,000	4,690,000	-45,000	0	-45,000
12	XXXX	6,982,000	2,400,000	4,582,000	5,585,000	-1,003,000	-594	-1,003,594
13	XXXX	6,999,000	1,860,000	5,139,000	5,599,000	-460,000	0	-460,00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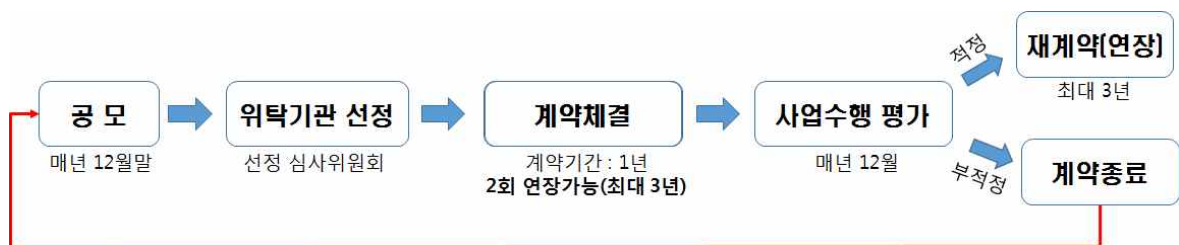
통보

일련번호 2-03-02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목 근로자건강센터 공모주기 등 운영방식 미흡
내용

공단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병원, 산업보건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건강센터”라고 한다)」 운영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건강센터는 공모방식을 통해 신청을 받아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매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 12월에 사업수행 결과의 성과평가를 통한 심사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사업의 지속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건강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3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위탁기관을 재공모하여 건강센터 운영기관을 재선정하고 있으며, 이때 이전의 위탁기관도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 건강센터 위탁운영 절차도



* 자료: 건강센터 업무수행 기준을 토대로 재구성

건강센터 사업 시행(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건강센터 위탁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8년 현재 운영 중인 21개의 건강센터 중 17개 기관이 최초 계약 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재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되었고, 최초 계약일부터 현재까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간 지속적으로 건강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덧붙임 참조)

이와 같이, 건강센터 운영의 계약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여 매 3년마다 재공모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위탁기관이 차기 건강센터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의 기준과 같이 매 3년마다 신규 위탁기관을 공모하는 방식은 공모 취지나 업무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그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도 공모 및 선정 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낭비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건강센터 운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건강센터 운영 참여기관의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국가 정책에도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의 3년 주기 재공모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센터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3년의 공모주기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건강센터와의 계약기간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건강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건강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현재의 3년 주기 공모방식에 대해 재검토하여 공모주기를 연장하는 등 중·장기적인 건강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라. 통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덧붙임] 근로자건강센터 위탁기관 운영 현황

연번	공모센터	선정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2	○○	XXXX						신규	연장	연장
3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4	○○	XXXX					신규	연장 (종료)		
	○○	XXXX							신규 (변경)	연장
5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6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연장
7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연장
8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9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10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11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12	○○	XXXX			신규	연장	연장	종료		
	○○	XXXX						신규 (변경)	연장	연장
13	○○	XXXX				신규	연장 (종료)			
	○○	XXXX						신규 (변경)	연장	연장
14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15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연장
16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17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연장
18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19	○○	XXXX	신규 (종료)							
	○○	XXXX		신규	연장	연장 (종료)				
	○○	XXXX					신규 (변경)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20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21	○○	XXXX				신규	연장	연장	재계약 (유지)	연장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련번호	2-03-03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근로자건강센터 평가 기준 불합리
내 용	

공단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병원, 산업보건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건강센터”라고 한다)」 운영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건강센터 사업의 내실화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강센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실태를 평가(이하 “운영실태 평가”라고 한다)하고 있으며,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매년도 건강센터 운영성과 등급평가(이하 “운영성과 평가”라고 한다)에 반영하고 있다.

‘운영실태 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건강센터의 인력운영, 사업수행, 예산·장비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4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총 11개의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력관리, 사업수행, 모니터링 효과 정보·보안관리 등 4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총 8개의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덧붙임 1 참조)

또한 ‘운영성과 평가’는 근로자 관리, 사업장 관리, 프로세스 관리 등 3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총 11개의 핵심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덧붙임 2 참조)

그런데, 상반기 운영실태 평가의 세부평가기준 중 ‘II.사업수행’의 ‘2.5 대외 업무 협력의 적정성(7점)’은 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추진 실적과 직업병 감시체계 참여 실적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평가기준은 건강센터 운영취지와 관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피평가대상인 건강센터는 실적 달성을 위해 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요청하는 인력 등을 건강센터 의사와 상관 없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지표로 보여진다.

또한, 하반기 평가지표 중 ‘II.사업수행’의 ‘2.3 내방비율(20점)’은 전년대비 내방고객의 방문횟수 향상율을 평가하는데, 평가점수는 건강센터 입지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될 소지가 있다. 즉, 현재 21개의 건강센터 소재지에 따라 근로자의 접근성이 유리한 기관은 내방실적 달성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내방실적 달성율이 낮게 나타나 일부 건강센터에 대해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등 건강센터 입지조건에 따라 실적이나 평가점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전체 건강센터를 대상으로 할 때 다소 불공정한 평가기준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 중 ‘프로세스 관리’의 ‘우수사례발굴 노력도’는 공단에서 매년 7월에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의 우수사례발표대회에 참여 및 입상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발표대회에 반드시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건강센터에게 발표대회의 참여를 강요하는 지표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현행의 건강센터 평가기준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현행의 건강센터 운영실태 평가기준과 운영성과 평가기준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등 건강센터 운영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다시 검토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덧붙임1]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실태 평가 기준표

◎ 상반기 평가 기준

구 분 (가중치)	세부항목	가중치
I. 인력운영 (25)	1.1 인력구성의 적정성	10
	1.2 인력운영의 적정성	15
II. 사업수행 (45)	2.1 위탁업무 수행의 적정성	10
	2.2 건강상담의 적정성	20
	2.3 필수직종 사업추진 등 적정성	5
	2.4 센터 운영 결과물 사용의 적정성	3
	2.5 대외 업무 협력의 적정성 - 협업추진,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 직업병 감시체계 참여	7
III. 예산·장비 관리 (20)	3.1 예산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15
	3.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적정성	5
IV. 정보·보안관리 (10)	4.1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성	5
	4.2 청렴이행의 적정성	5
계	-	100

◎ 하반기 평가 기준

구 분	세부 항목	가중치
I. 인력관리 (25)	1.1 인력구성	15
	1.2 인력운영	10
II. 사업수행 (33)	2.1 센터 운영 결과물 사용	4
	2.2 화학물질 중독 상담창구 운영	9
	2.3 내방비율	20
III. 모니터링 효과 (35)	4.1 모니터링 개선활동	35
IV. 정보·보안 관리 (7)	4.1 개인정보 보호	4
	4.2 청렴이행	3
계		100

[덧붙임2]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성과 평가 기준표

관점	핵심 성과지표(KPI)		가중치
근로자 관리(50)	이용율	사업목표 달성율	10
	관리율	50인미만 이용율	10
		재상담율	10
	건강수준 향상율	대상인원 달성율	10
		건강수준 향상율	10
사업장 관리(20)	작업환경 관리율	사후관리 달성율	10
		작업환경 컨설팅 비율	10
프로세스 관리(30)	운영실태 점수		18
	고객만족도 점수		6
	우수사례 발굴 노력도		3
	성과 기여도		3
계			100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련번호 2-03-04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목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실적 인정기준 불합리
내용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상질병예방 및 건강유지·증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21개소) 및 분소(21개소)를 근로자들이 밀집한 직업건강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 근로자건강센터 계약현황 및 성과지표에 따르면 센터별 운영실적을 7,000 ~ 8,000회로 계약하였고, 1인당 상담실적 인정기준을 2016년 『근로자건강센터 기능·역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년도 50회에서 2017년에는 90회로 상향하였다.

그런데 2017년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1인당 평균 2.01회 이용하였으나, ○○근로자건강센터는 연간 1인당 평균 2.86회로 높게 나타났다.

【표1】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실적(2017년)

구분	목표	실적			연간 이용인원	연간 1인당 평균(회)
		합계	건강상담	전문교육		
전체 근로자건강 센터	149,000명	180,001명	168,753명	11,248명	89,531명	2.01회
○○근로자 건강센터	<u>7,000명</u>	<u>8,541명</u>	<u>8,313명</u>	<u>228명</u>	<u>2,989명</u>	<u>2.86회</u>

* 자료: 건강센터 방문상담실적 자료 재구성

특히, 2017년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운영한 “응답하라 S라인” 근골격계 질환예방 운동교실 운영현황을 확인해 보았더니, 연중 주 4일, 점심시간(2회)에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이용자 21명이 총 1,753회 운동교실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건강센터 연간목표인 7,000회의 25%를 차지하였다.

【표2】 ○○근로자건강센터 운동교실 운영현황(2017년)

구분	기간	주	시간	인원	전체 이용회수
실적	연중	4일	12:00~12:25 12:30~12:55	21명	1,753회

* 자료: 건강센터 방문상담실적 자료 재구성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100회 이상 이용자 9명이 연간 총 1,426회를 이용한 결과 ○○근로자건강센터 연간 목표 7,000회의 20.4%를 상담실적으로 인정하여 동일인의 중복방문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 이용실적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어 신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받을 근로자 발굴노력이 미흡하였다.

【표3】 ○○근로자건강센터 100회 이상 이용자 현황(2017년)

구분	계	강**	김**	김**	박**	박**	백**	장**	정**	진**
회수	1,426	144	211	153	148	134	128	222	152	134

* 자료: 건강센터 방문상담실적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향후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실적을 사후관리 대상사업장 및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근로자건강센터 본래 취지에 맞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관련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물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인정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통 보

일 련 번 호 2-03-05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근로자건강센터 개인정보관리 미흡

내 용

우리 공단은 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를(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위탁하여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관련법”이라 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르면,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미비한 사항들이 발견 되었다.

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계약서 관련

근로자건강센터 계약서 제19조(개인정보 보호)에 따르면,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및 상담관련 자료, 사업장 명부 등에 대하여는 유출금지 및 기밀유지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이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의 내용은 운영기관과 운영계약 시 별도로 체결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관련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서, 운영기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기기 운영 안내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적절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있었다.

다. 업무용 PC 개인정보관리 관련

관련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프로그램(근로자건강센터/분소 실적관리 통합시스템)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업무PC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또는 저장매체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마땅하나, 보안성이 없는 일반인터넷과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개인정보처리 방침 수립 및 공개 관련

관련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내부관리 계획만 시행하였고, 그마저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 하지 않았다.

마. 내부관리계획 운영 관련

관련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립해야하는 항목이 아래 **【표】** 와 같지만, ⑤, ⑥, ⑦, ⑨, ⑩, ⑫, ⑬ 사항은 누락되었으며,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될 필수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누락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누락
⑦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누락
⑧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⑨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누락
⑩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누락
⑪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⑫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누락
⑬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누락
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내용 발췌

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관련

관련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실적관리 통합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나, 확인 결과 수차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도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 개인정보파일 운영 관련

관련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는 심리검사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업무별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처리·보유하고 있으나, 보유한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직업건강사업 특정감사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라.통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06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
관련자(소속기관) ○○원장(상동)
제 목 측정·특검 비용지원 기관 관리기준 부재
내 용

공단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노동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비용지원」을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업무 처리지침」,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비용은 실시기관에서 별도의 청구양식에 의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파일의 반송조치 또는 비용 삭감 조치 후 비용지원을 신청한 기관으로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중 비용 삭감 및 서류의 반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시 삭감 처리된 기관현황을 살펴 보면, 기관평균 삭감률은 19.2%인 반면 (재)○○병원은 62.9%로 가장 높고 삭감률이 30%를 초과하는 기관이 37개소로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급 요청 서류의 반송률은 2.1%로 반송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이 135개소로 대부분이지만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작업환경의학과인 경우 64.3%로 반송률이 가장 높고 반송률이 10%를 초과하는 기관은 12개소로 확인되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시 삭감 처리된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평균 삭감률은 6.6%로 높지 않으나 (의)○○재단 ○○병원의 경우 88.9%로 가장 높고 삭감률이 10%를 초과하는 기관이 36개소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급요청 서류 반송률은 32.4%이며 이 중 ○○병원이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송률이 40%를 초과하는 기관은 74개소로 전체기관의 34.3%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비용 삭감처리 및 파일을 반송할 경우 비용지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수행하여 심사기간을 연장시키고 예산집행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원(○○센터)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기관 비용지원 청구 자료의 신뢰성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기관 평가기준을 수립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기관에서 스스로 청구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청구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기관 평가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07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측정·특검 비용지원 모니터링 방법 불합리

내 용

공단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노동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비용지원」을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업무 처리지침」,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근무일기준 20일 이내에 측정방법(검사항목) 및 지원수가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외부전문기관(○○협회)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별 심사분석 회의, 반기별 자문회의를 개최 및 운영하고 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비용청구 심사를 통해 【표】과 같이 측정 방법, 측정시간 및 검진주기 등의 미준수 측정기관 및 사업장을 발굴하여 매월 일선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일선기관에서는 매월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모니터링 대상 선정기준 적정성 확인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시정)을 기관에 요구하고, 측정기관 지정기준 위반 사항 등 고용노동부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있다.

【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모니터링 대상

구 분	모니터링 대상
특수건강진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해인자로 야간작업을 실시한 경우 : 야간작업 실시기준 적정성 확인 필요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유해인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인자를 검진한 경우 : 임시, 단시간 취급물질인지 또는 실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지 확인 필요
	소음 실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유해인자로 검진한 경우 : 측정결과 소음 85dB 이상 특검실시 안내 필요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대상 유해인자를 MSDS 확인으로만 판단한 경우 : 해당 유해인자 MSDS 비치 및 취급물질 여부 등 확인 필요
작업환경측정	소음실시 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측정된 경우 : 소음 측정실시 기준 안내 필요
	작업환경측정시간 미준수 의심 사업장(ceiling측정, 고열 사업장 제외) : 측정시간 준수 여부 확인 필요
	측정결과상 전화, 금회 연속 불검출 다수 사업장 : 해당 유해인자 취급여부 및 MSDS 확인 필요
	기존 측정 유해인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측정 제외 또는 신규 유해인자를 측정된 경우 : 측정 미실시 사유 또는 신규 유해인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고열 측정 사업장 : 열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확인 필요

* 자료: 2018년도 사업계획추진지침 내용 발췌

하지만, 2018년도 9월까지 일선기관에서 실시한 사업자 모니터링 현황을 살펴보니 본부에서 발굴한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모니터링 대상사업장 2,126개소 중 91개소, 특수건강검진 모니터링 대상사업장 3,447개소 중 70개소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모니터링 대상 선정사유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않는 사업장이 5,412개소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모니터링 대상사업장에 대한 목표부여 및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일선기관에서 모니터링 실시 후 그 결과를 사업장에만 송부하고 본부로는 송부하지 않고 있어 측정 비대상 사업장이 확인되어도 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이력관리를 할 수 없는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절차가 부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우선순위 설정, 후속조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우선순위 설정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08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측정·특검 비용지원 심사 위탁수수료 지급기준 불합리
내 용

공단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노동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비용지원」을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업무 처리지침」,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매년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급 요청자료에 대한 측정방법(검사항목) 및 지원수가 등의 적정성 심사를 위탁 운영하여 지급하고 있다.

- 2018년 위탁기관 : (사)○○협회
- 계약금액 : 458,350,000 원
- * 작업환경측정분야(50,000개소, 166,800,000 원)
- * 특수건강검진비용 분야(350,000명, 291,550,000 원)
- 계약기간 : 2018. 4. 2. ~ 2018. 12. 21.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70%이내의 선금과 매월 수수료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수수료 지급 비율은 심사완료물량을 기준으로 심사목표달성도, 심사결과 신뢰도를 평가하여

수수료 삭감비율(최대 30%)을 결정하며, 이때 공단은 심사완료 물량의 5% 이상을 표본심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최종점수 및 수수료 삭감비율의 결정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된다.

$$(최종점수) = \sum (각 지표별 평가점수 \times 가중치)$$

【표1】 심사기관 수수료 평가지표

평가지표	지표산식	평가시기	배점	가중치
심사목표 달성도	(심사완료 건수/비용청구 건수) × 100 ※최저 점수 60점	매월	100	0.4
심사결과 신뢰도	[1-(오류 발생건수)/표본심사 건수] ×100	매월	100	0.6

* 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심사업무 위탁계약서 내용 발췌

【표2】 최종점수에 따른 수수료 지급비율

최종점수	수수료	수수료 지급비율
90점 ~ 100점	0%	1.0
80점 ~ 89점	10%	0.9
70점 ~ 79점	20%	0.8
69점 이하	30%	0.7

* 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심사업무 위탁계약서 내용 발췌

2018년도 계약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 중 작업환경측정분야 오류발생건수를 살펴보니 4월 11건, 5월 8건, 6월 9건으로 9월까지 발생한 33건의 84.8%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중 4월, 5월은 수수료가 20% 삭감되어 지급되었으며,

특수건강검진분야 오류발생건수는 4월 18건, 5월 17건, 6월 53건으로 9월까지 발생한 123건의 71.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4월, 5월은 수수료가 30% 삭감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기관에서 매월 심사비용을 청구하고 이때마다 오류발생건수, 표본심사 확인 후 위탁 수수료 판단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심사의 수준 및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판단되지만,

위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비용지원 심사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위탁기관 수행요원의 심사초기 오류발생건수가 다소 많이 발생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이 쌓이면서 안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고, 매월 이루어지는 지급 요청시 현재와 같이 오류발생건수를 적용한다면 매년 마다 바뀔 수 있는 위탁기관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초기 3개월에는 항상 20~30%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월 지급요청 서류를 검토하고 삭감률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절차 보다는 위탁계약 종료 시점에서 전체 오류 건수를 평가하여 수수료 삭감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업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심사 위탁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 및 업무절차에 대하여 간소화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지급시 오류발생건수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평가하여 수수료 삭감비율을 산정하는 등 수수료 지급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일련번호 2-03-09

관계기관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

관련자(소속기관) ① ○○실장(상동)
② ○○원장(상동)

제목 측정·특검 비용지원 심사 프로그램 운영 미흡

내용

우리 공단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K2B시스템* 및 E-ER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K2B(Kosha to Business) : 공단과 산재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재해예방 기관과의 온라인 정보교류를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 지원 및 통합 모니터링 수행

** E-ERP(Extend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공단 내부직원을 위한 K2B시스템으로 ERP의 확장된 기능을 탑재하여 산재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각각의 전산시스템들은 공단 고유의 업무들과 관련하여 방대하고 중요 데이터들이 연관되고 결합되어 운영된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내·외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업무 진행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건강 디딤돌 관련 사업의 전산시스템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발견 되었다.

가. E-ERP 비용지원 수가 관리 관련

우리 공단은 측정·특검 비용지원에 대한 수가 변동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측정분야 수가의 이력관리가 미흡하여 과거 지원 금액이 현재 수가로 적용되고 있으며, 수가 변경 프로그램이 없어 수가가 변경 될 때마다 엑셀로 작성된 수가를 정보화센터에 부탁하여 수동으로 업로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측정분야 비용지원 수가의 이력이 관리 될 수 있도록 비용지원 수가 변경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하다.

나. 사업장 근로자 수 관리 관련

공단은 사업장에서 측정·특검 비용지원이 신청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대상 :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확인을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 근로자 수 정보를 정보화센터에 다시 요청하여 DB에 업로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 업데이트가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공단은 비용지원 신청·심사 등 여러 단계에서 신청자에게 SMS를 보내서 신청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SMS 문구 변경 기능이 없어 SMS 문구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정보화센터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SMS 문구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는 SMS 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SMS 관리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라. K2B 시스템 저장공간 관련

작업환경측정, 특검측정 등 결과자료 중 이미지 저장용량 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K2B시스템 속도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저장용량 부족으로 K2B시스템에 3개월에 1TB씩 추가로 할당하여 증설하고 있으나,공단 전체 여유 저장 공간이 10.4TB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K2B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이미지 용량을 축소하여 저장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필수 저장기간이 지난 파일을 삭제하거나, 예산 확보를 통하여 저장 공간을 확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2018.10월 말 현재 8TB¹⁾ 할당 된 용량중 7TB(87.50%) 사용 중

관계기관 의견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점검결과 발견된 <가>~<다>에 대하여 K2B시스템 및 ERP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시기 바라며,(통보)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원장)은

점검결과 발견된 <라>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저장공간 확보 및 속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라.통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1) TB(terabyte) :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정보량의 단위.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GB)에 해당하며, 대용량 기억 장치의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10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신청서류 복잡

내 용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고자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업무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별첨서류로 총 5개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는 서류 등은 사업대상의 선정과 협약체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출 서류 중 「노·사대표 서명 확인서」의 경우 서명 주체가 근로자측 대표 및 사용자측 대표로 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없고, 사실상 선언적 의미 서류에 그치고 있고,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제안서」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사항 중 ‘본 제안의 특징, 장점 및 전파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항목은 ○○본부 및 ○○본부 등 일선기관에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제출되고 있고, 사업장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신청서류 및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후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신청 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사업대상 선정과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서류나 내용 위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2)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11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결정 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내 용

「사업계획 추진지침」에서는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정, 제안내용의 적정성, 지원비용 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역본부별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결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의 내용 등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사업 매뉴얼」에서는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지역본부별 담당자가 심사위원회 심사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검토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심사위원회에 담당 직원의 의견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심사의 편향이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 의견서 작성·제공하는 절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결정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절차를 폐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결정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이전에 검토의견서를 작성·제공하는 절차를 폐지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2)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12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협약 체결방식 부적정
내 용

「사업계획 추진지침」 및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업무 매뉴얼」에서는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이 확정되면 대상 사업장과 지역본부간 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은 지역본부장과 사용자측 대표, 근로자측 대표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협약 체결 후 「외부전문기관 동의서」를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징구하고, 비용을 지급 할 시 2차례에 걸쳐 「지급 교부(1차 지원금) 위임장」, 「지급 교부(잔금) 위임장」을 받아 위임장을 근거로 공단 지역본부에서 컨설팅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서 체결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로 되어 있어 협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공단 지역본부와 사업장간의 협약으로만 되어 있어 「외부전문기관 동의서」 등 위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비용을 지원받는 컨설팅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협약서의 효력 및 컨설팅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확실히 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단 지역본부와 사업장, 컨설팅 기관간의 다자간 협약 체결방식 등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사업장과의 협약 체결 주체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약서의 효력 확보 및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협약 체결방식 및 주체 등을 변경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협약서의 법적효력 확보와 협약 체결 주체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의 주체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2)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및 시 정 요 구

일 련 번 호 2-03-13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부적정

내 용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각종 계약 및 협약 등의 업무 처리 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는 신분증 등과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 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업무 매뉴얼」에서는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지원협약 체결 시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실무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기관에서는 본인여부만 확인하고 돌려주면 되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 신분증 사본을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사업관련 편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의 활용 동의절차를 통해 수집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지역본부별로 수집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등은 폐기토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 ① 사업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거쳐 수집하도록 하고, 현재의 협약체결 시와 같이 본인확인용으로만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신분증을 돌려주는 절차로 변경하도록 하시기 바라며,(개선)
- ② 지역본부별로 수집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1)시정, (2)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련번호	2-03-14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목	방문상담(컨설팅) 수당지원한도 부적정
내용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외부전문기관과의 컨설팅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 공단은 예산단가(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문상담(컨설팅)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아래와 같이 방문상담(컨설팅) 시간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 1일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인 경우 : 최대지원한도의 50%
2. 1일 6시간 이상인 경우 : 최대지원한도의 100%

○○본부 및 ○○본부를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업장 방문 시 2시간 미만 상담(컨설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라도 수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당을 신청했다라도 삭감조치*된 경우가 있으며, 현장 방문 시 2시간이상 상담(컨설팅)을 수행할 충분한 수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2시간 이상 현장에 머무르기 위해 1인당 상담(컨설팅)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등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웰니스가 (주)○○도시가스의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수행 시 방문상담 및 컨설팅을 119회(1,583명) 수행하였으나 41회(419명) 삭감조치 및 수당 미신청

【표】 2시간미만 상담(컨설팅)으로 인한 수당 미신청 및 삭감 현황

연번	구분	일시	장소	참여인원	강사	비고
계				419		
1	방문상담 뇌심혈관질환예방	2017-10-30	xxx	25	○○○	
2		2017-10-31	xxx	13	○○○	
3		2017-11-02	xxx	14	○○○	
4		2017-11-03	xxx	20	○○○	
5	컨설팅 뇌심혈관질환예방	2017-06-22	xxx	11	○○○	
6		2017-07-03	xxx	15	○○○	
7		2017-07-14	xxx	6	○○○	
8		2017-07-21	xxx	5	○○○	
9		2017-07-26	xxx	18	○○○	
10		2017-08-22	xxx	7	○○○	
11		2017-08-28	xxx	8	○○○	
12		2017-08-29	xxx	7	○○○	
13		2017-10-10	xxx	6	○○○	
14		2017-10-12	xxx	6	○○○	
15		2017-10-16	xxx	6	○○○	
16		2017-10-17	xxx	8	○○○	
17	방문상담	2017-10-31	xxx	13	○○○	
18	근골격계질환예방	2017-11-02	xxx	14	○○○	
19	컨설팅 근골격계질환예방	2017-06-19	xxx	14	○○○	
20		2017-06-22	xxx	11	○○○	
21		2017-06-26	xxx	11	○○○	
22		2017-06-29	xxx	7	○○○	
23		2017-07-03	xxx	8	○○○	
24		2017-07-04	xxx	14	○○○	
25		2017-07-06	xxx	9	○○○	
26		2017-07-07	xxx	4	○○○	
27		2017-07-10	xxx	6	○○○	
28		2017-07-17	xxx	9	○○○	
29		2017-07-20	xxx	10	○○○	
30		2017-07-24	xxx	6	○○○	
31		2017-07-26	xxx	10	○○○	
32		2017-07-27	xxx	11	○○○	
33		2017-08-23	xxx	18	○○○	
34		2017-08-29	xxx	14	○○○	
35		2017-08-30	xxx	6	○○○	
36		2017-09-11	xxx	6	○○○	
37		2017-09-12	xxx	12	○○○	
38		2017-09-14	xxx	8	○○○	
39		2017-10-19	xxx	7	○○○	
40		2017-10-23	xxx	8	○○○	
41		2017-10-26	xxx	8	○○○	

자료 : (주)○○도시가스의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완료보고서(○○웰니스 수행) 내용 재구성

또한,공단 담당자는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완료보고서」 검토 시 상담(컨설팅) 시간 미준수 관련 자료 확인 및 건강증진활동 비용 삭감조치 등에 과도한 시간투자 및 업무부하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방문상담(컨설팅)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가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수당지원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방문상담(컨설팅)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가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문상담(컨설팅) 수당의 시간기준 변경 등 외부전문가의 수당지원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15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사업장 건강증진 비용지원 완료보고서 작성내용 중복

내 용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2부)를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사업의 평가, 벤치마킹 및 전과가능성, 기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완료보고서의 「사업추진실적」 작성 시에는 ‘주요결과’와 ‘세부 추진결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결과’의 주요작성내용은 계획대비 프로그램별 추진일자와 실적(참여인원)이고 ‘세부 추진결과’의 주요작성내용은 프로그램별 추진일자, 장소, 참여인원, 주요내용, 강사 등으로 공단에서 완료보고서 검토 시 확인해야할 주요 내용(추진일자, 시간, 참여인원)이 중복되어 있다.

【표1】 사업추진실적(주요결과) 작성양식

구분	계 획			실 적			비고
	세부계획	추진일정	계획	소계	추진일자	실적	

자료: 건강증진 비용지원 업무수행 매뉴얼의 완료보고서 양식 재구성

【표2】 사업추진실적(세부 추진결과) 작성양식

구분	일시	장소	참여인원	주요내용	강사	비고

자료: 건강증진 비용지원 업무수행 매뉴얼의 완료보고서 양식 재구성

또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대상자가 완료보고서 제출 후 공단으로부터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비용지원(잔금) 요청서」의 첨부 자료로써, 완료보고서의 「예산집행실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내 기록물(덧붙임 참조)’의 주요내용 또한 프로그램별 집행액, 추진일자, 참여인원, 강사 등으로 「사업추진실적」작성 내용을 포함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의 작성양식 일원화 등을 통해 완료보고서의 작성내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완료보고서의 작성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완료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작성내용을 일원화하는 등 완료보고서 간소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덧붙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회계관리프로그램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회계관리프로그램 (지원금 입력용)

(단위: 천원)

지원대상자 (연합체)명	수행주체 (자체 or 외부기관 명)	사업수행일	수입		지출								주요내용					
			금액	내역	프로그램명	예산항목	집행액	집행내역	지급처	집행잔액	증빙서류	지급일	지급방법	방문지(사업장)	지원자	지원시 건(명)	참여(상 당)인원	
○○가나다라	○○카피파라	계	3,000				515											
		(적상액)																
		2015-03-01	3,000	선금금														
		2015-03-02			비밀관리	임차료	100	100,000원*1일=100천원	○○상공회의소	2,900	세금계산서	2015-03-02	체크카드					
		2015-03-06			직무스트레스관리	강사료	200	100,000원*2시간=200천원	○○○○	2,700	우통장입금확인서	2015-03-06	계좌입금	○○상공회의소		2	50	
		2015-04-02			비밀관리	홍보물	15	150원*100개=15천원	○○연회소	2,685	세금계산서	2015-04-02	체크카드					
		2015-04-06			비밀관리	입건비(의약전문가)	200	200,000원*1일=200천원	○○전문기관	2,485	우통장입금확인서	2015-04-06	계좌입금	○○상공회의소		6	40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16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사업수행 모니터링 방식 불합리
내 용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2018년도 사업계획추진지침』 및 『2018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업무수행 가이드』 중 【17. 협약체결이후 모니터링 수행방법】에 따라 일선 기관에서는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점에서 건강증진활동 개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간 동안 일선기관에서 1회 이상 사업장에 방문하여 건강증진활동 계획에 따른 이행 및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유선모니터링 시 사용하는 『사업수행 유선 모니터링 의견서』양식(덧붙임1)과 현장모니터링 시 사용하는 『사업수행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양식(덧붙임2)의 모니터링 항목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업수행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양식에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외부 전문가 서명란과 항목별 개선실행방안 작성란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모니터링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실효성이 없는 유선모니터링 절차를 없애고, 『사업수행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에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년도 사업수행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구분	□신규, □연속지원 ¹⁾ (년)	
사업장명		
방문일자	. . .	
사업장 참여자		
참 여 전문가	공 단	
	외 부	

주1) : 최초 지원연도를 기재

□ 지원내역

건강증진 활동개요	세부추진 프로그램명 ¹⁾	○ ○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간)

주1) : 세부추진 프로그램은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제안서상에 기재된 프로그램 전부를 기재

□ 연장모니터링 결과

○ 지원내역 모니터링 사항

항 목	확인결과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게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게시(게시일:) <input type="checkbox"/> 미게시
2) 사업추진 중 일부활동의 중단 및 폐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걱정, <input type="checkbox"/> 미흡
3) 공단에서의 지원으로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어렵거나, 지원대상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프로그램 시행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걱정, <input type="checkbox"/> 미흡
4)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제안서상의 추진프로그램(항목) 이행여부	<input type="checkbox"/> 걱정, <input type="checkbox"/> 미흡
5) 협약서에 첨부된 예산집행계획서상의 걱정 집행여부	<input type="checkbox"/> 걱정, <input type="checkbox"/> 미흡
6) 기타 지역본부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항 (확인사항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걱정, <input type="checkbox"/> 미흡

☞ 확인결과 미흡 사항은 '개선실행방안'에 세부내용 기재

□ 개선 실행방안

항목	개선 실행방안

☞ 모니터링 사항별 항목은 번호를 기재

총평

○

-

○

-

○

-

○

-

○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17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지원금 전용통장 개설 요구 불합리
내 용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협약서』 제11조(사업비의 운용 및 기록유지)에 따라 비용지원 사업 협약서 체결 이전 지원대상자 법인명의로 지원금 전용통장을 개설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한 후 사업주, 노동조합 및 대표 사업장 사업주 명이나, 외부전문기관 명의의 지원금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사업 진행기간 동안 지원금의 입·출금은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통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외부전문기관 법인 또는 대표 개인명의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서 동시에 여러 사업장(연합체)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통장 사본의 입·출금 내역에 수기로 사업장(연합체)명을 기재한 후, 관련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이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원금 입·출금 내역을 구분하여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증진활동과 관련 없는 외부전문기관 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불필요하게 열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사업 완료 후, 제출받는 사업완료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및 방문상담(컨설팅, 교육, 회의) 증빙자료를 통해 지원금 사용내역의 검증이 가능하므로, 지원금 전용통장 개설을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지원금 전용통장 개설 의무를 삭제하고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집행내역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지원금 전용통장 개설 의무를 제외하는 등 협약서 내용을 개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2-03-18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외부기관 참여 전문가 자격(경력) 확인 방식 개선

내 용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2018년도 사업계획추진지침』 및 『2018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업무수행 가이드』 중 【25. 전문가 자격 및 경력 확인방법】에 따라 일선기관에서는 외부기관 전문가 자격 및 경력은 참여 전문기관(사업장 또는 연합체)에서 제출한 자격증 및 재직(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선기관에서는 동일한 전문가가 여러 사업장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동일한 자격증 및 재직(경력)증명서를 중복 편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도 ○○실에서는 이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의 중복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누리 ERP에 【외부 전문가 관리】 메뉴를 개설하였으나, 기능에 오류가 있어 일선기관에서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외부 전문가의 자격(경력) 현황을 나누리 ERP 【외부 전문가 관리】 메뉴에 등재하고, 신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 일선기관에서 관련 자격(경력)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가 등록 요청하면, 본부에서 전문가 등록을 확정하는 등 일선기관에서 전산으로 외부 전문가 자격(경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현재 구축된 나누리 ERP 외부전문가 관리 메뉴를 복구하여 일선기관에서 불필요한 중복서류 징구 및 편철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동일한 전문가의 자격(경력) 증빙 서류 중복 편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ERP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문가 자격(경력)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통 보

일 련 번 호 2-03-19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질식재해예방 대여장비 관리 미흡
내 용

공단은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질식 3대 위험영역에 대한 질식위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선기관별로 질식위험작업 수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의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질식재해 예방장비는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의 총 5종으로 구분되며, 그 보유현황은 【표1】 과 같다.

【표1】 일선기관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현황(2018년 9월 기준)

구분	장 비 대 여 수(대)							
	계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공 기 호흡기	송 기 마스크	삼각대
		혼합가스 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CO/CO ₂ 측정기				
합계	539	135	29	32	108	87	121	27

* 자료: ○○실 특정감사 제출자료

한편, 일선기관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장비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 ‘장비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장비 중 가스농도측정기는 국가교정기관을 통하여 교정(측정기 등) 실시하고 있으며, 공기호흡기는 압력용기에 대해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되, 매회 사용 시 관내 소방청 등의 공기 충전 시설이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청정한 공기를 충전하여 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소방청에서 외부장비의 공기충전을 금지함에 따라 일부 일선기관에서는 공기호흡기의 공기 충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2016년까지 연평균 약 100회 대여하던 공기호흡기가 2017년부터 절반 정도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2】 연도별 공기호흡기 대여 횟수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대여횟수(회)	79	96	128	149	59	32

* 자료: ○○실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18년 5월 이후 실적 미파악)

다만, 2018년도 현재 일부 일선기관은 관내 민간의 공기호흡기 충전업체가 소재하여 이들 업체를 통해 유상으로 공기호흡기를 충전하여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3】 일선기관별 충전업체 보유 현황

년도	계	강원 지사	부산 본부	울산 지사	경남동부 지사	광주 본부	충부 본부	대전 본부
충전업체수 (개소)	8	1	1	1	1	2	1	1

* 자료: ○○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이 없는 일선기관은 공기호흡기를 재충전하여 대여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 공기호흡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으로부터 장비 대여신청 시 일부 일선기관에서는 공기호흡기 대신 송기마스크 대여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기호흡기의 반복적인 대여와 사용으로 공기호흡기 안면부 오염이나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기호흡기 안면부에 대한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선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기호흡기 87대 중 2018년도에 공기를 재충전한 공기호흡기는 30대인 것으로 파악되어 대부분의 공기호흡기를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소방법에서는 공기호흡기를 공기를 1년 주기로 재충전하는 것을 권장. 단, 사용 시에는 매회 충전이 필요

한편,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소 까다로운 설치기준과 폭발사고 등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우리 공단 일선기관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도 시설의 설치·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우리공단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 충전시설 1개만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 질식재해 예방장비 중 공기호흡기는 수시로 공기를 충전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위생관리의 문제점이 있어 정상적으로 장비대여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공기호흡기 뿐만 아니라 질식재해 예방 장비에 대한 관리 및 대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중 공기호흡기에 대한 안정적 사용과 대여를 위해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을 추가 발굴·확보하는 등 공기호흡기의 관리 및 대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현행의 장비대여 제도를 잠정 중단하는 등 현행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제도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라. 통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2-03-20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목	콜센터 고객응대업무 위험도 평가 시 평가방법 부적정
내용	

공단은 자살(정신질환)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객응대업무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스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살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추진을 위해 콜센터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 콜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또는 관리자) 및 근로자대표와 면담하고, 콜센터 고객응대업무 평가표(덧붙임1 참조)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객응대업무 관리실태(①~⑨)」 및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수준(⑩)」을 평가*하고, 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위험도 DB구축 및 등급화(우수,보통,미흡,불량)하여 불량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의 관리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항목]

- ① 감정노동 위험성 인지도 ② 고객응대근로자 교육 ③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 규정화
- ④ 실행여부 ⑤ 건강보호 매뉴얼 ⑥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전화연결음 ⑦ 문제해결 제도 및 절차
- ⑧ 심리안정조치 ⑨ 휴게시설 등 ⑩ 감정노동수준

* 10점 척도로 감정노동 경험 빈도 및 정도가 매우 높을 경우 10점, 매우 낮을 경우 1점으로 평가하고 7점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위험도는 보통 및 우수로 관리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위험도평가를 수행한 667개소('18.10.02. 기준)의 위험도 평가 현황 및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수준 평가」의 경우 실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수준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단일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근로자대표와 면담을 통하여 감정노동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위험도 평가결과 대상사업장(667개소)의 95%가 감정노동수준이 우수(400개소, 60%) 및 보통(232개소, 35%)으로 대부분 사업장의 감정노동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덧붙임2 참조)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고객응대업무 위험도 평가 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고객응대업무 위험도 평가 시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콜센터 고객응대업무 위험도 평가표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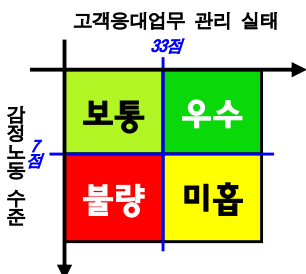
□ 사업장 기본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사업개시번호	
주소	()		
평가일자	2018. . .	노동자수	
담당자(직책)		평가자	

□ 위험도 평가

항 목	평가결과
1. 감정노동 위험성인지도(사업주 관심) [1(매우 불량)~5(매우 양호)]	① ② ③ ④ ⑤
2. 고객응대근로자에 감정노동 관리방법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고객응대근로자가 “전화 끊을 수 있는 권리” 규정화	① ② ③ ④ ⑤
4. 고객응대근로자의 “전화 끊을 수 있는 권리” 실행	① ② ③ ④ ⑤
5.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및 실행	① ② ③ ④ ⑤
6.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용 전화연결음 사용	① ② ③ ④ ⑤
7. 문제 발생시 해결제도 및 절차	① ② ③ ④ ⑤
8. 감정노동 경험시 노동자 심리안정 조치	① ② ③ ④ ⑤
9. 휴게시설, 건강관리실 등 운영 현황	① ② ③ ④ ⑤
10. 해당 사업장의 감정노동 수준은? [1(매우 낮음)~10(매우 높음)]	1 5 10 ----- ----- -----

□ 위험도 구분



구분	불량	미흡	보통	우수
고객응대업무관리(1~9)	33점 미만	33점 이상	33점 미만	33점 이상
감정노동수준(10)	7점 이상	7점 이상	7점 미만	7점 미만

(덧붙임2) 위험도평가 결과('18.10.02 기준)

일선기관	실적	위험도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전체 합계	667	400	232	14	21
(점유율)	100%	60%	35%	2%	3%
○○지사	9	4	4	1	
○○본부	193	128	54		11
○○지사	10		10		
○○지사	6	4	2		
○○지사	3	2	1		
○○지사	8	5	3		
○○지사	1	1			
○○지사	127	96	28	3	
○○지사	2		1	1	
○○지사	2	2			
○○지사	17	8	8		1
○○지사	16	2	13	1	
○○지사	10	2	8		
○○지사	16	9	6	1	
○○지사	15	6	9		
○○지사	3	1		1	1
○○지사	19	5	14		
○○본부	46	39	4	2	1
○○본부	27	18	9		
○○본부	55	40	12		3
○○지사	15	9	6		
○○본부	34	12	19		3
○○지사	7	3	3		1
○○본부	16	4	9	3	
○○지사	10		9	1	